# 「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188/compare?from=469&to=470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6:45:2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3조(구성)**<br>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.<br>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. | **제3조(구성)**<br>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처에 제출한다.<br>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|
| **제6조(지원금액의 결정)**<br>①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,000,000원을 넘지 않는다.<br>②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. | **제6조(지원금액의 결정)**<br>①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,000,000원을 넘지 않는다.<br>②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|
| **제7조(지원제한 및 환수)**<br>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. | **제7조(지원제한 및 환수)**<br>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|
| **제8조(기타)**<br>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 연구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| **제8조(기타)**<br>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|

## 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**「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3조제1항 및 제7조 중 "연구진흥실"을 각각 "연구처"로 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"교수연구진흥위원회"를 각각 "교수연구위원회"로 한다.

제8조 중 "교수 연구진흥위원회"를 "교수연구위원회"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